

#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

[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관련]

##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(농산물)을  
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한산애 구기자

나. 제조일자 : 2026. 2. 5.

다. 회수사유 : 프로피코나졸 검출

라. 회수영업자 : 영주농협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(APC)

마. 영업자주소 : 경북 영주시 평은면 평은로 900

바. 연 락 처 : 054-638-9930

사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-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

(☎054-639-6693, FAX 054-639-1411)